

## 12. 住宅의 建設·供給 및 管理에 관한 規定中 改正令

건설교통부훈령 제183호 1997. 8. 12

### 주요 골자

- 가. 등록업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을 건설한 경우 등록업자의 주택건설실적은 등록업자 토지소유지분의 건설호수와 나머지 토지지분 건설호수의 2분의 1을 합산한 건설호수로 함(안 제3조 제2항)
- 나.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보도록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소유로 보는 규정을 정리함(안 제10조)
- 다. 주택청약 1순위자격을 인정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면적을 확인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시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최종 확정도면인 사용검사시의 설계도면에 의하도록 함(안 제12조)
- 라. 주택건설 사전결정제도를 법 취지에 맞게 의무적절차에서 임의적절차로 변경함(안 제13조)
- 마.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건설교통부 고시)에 반영된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없앴(안 제19조)

**개 정 이 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상위규정의 개정 등으로 이와 관련되는 규정을 정리하고자 하며 중복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 기준으로 고시한 감리원배치규정 등을 삭제하고 그간 질의회신으로 운영하여 오던 사항을 명문규정화 하는 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4·제44조 제3항 및 도시재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을 건설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실적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업자가 사업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건설호수와 나머지 토지지분에 해당하는 건설호수의 2분의 1을 합산한다.
2. 등록업자가 사업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건설호수의 2분의 1로 한다.

제10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12조 본문중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당첨자중”을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사업계획승인”을 “사용검사”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14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 제3항중 “중간검사”를 “임시사용승인”으로 하고 “통보하여 검사에”를 “검사에”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